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각장애인 선거권자를 위한 선거공보상 수어QR코드 표시〉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56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소희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12. 18.
3. 회 부 일 : 2025.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국수어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은 한글 이해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그 결과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선거에 참여하여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QR코드를 삽입하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후단 및 제122조의2제3항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작성되는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제작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①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u>. 이 경우 선거공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u>
③ ~ ⑭ (생략)	③ ~ ⑭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費用은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 7. (생 략) ④ · ⑤ (생 략)	2의2. 제65조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의 수 어QR코드 제작비용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

“선거공보”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 및 기호, 경력, 정책, 사진 등을 담은 문서로서,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작성하고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후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됨.¹⁾

[선거공보 예시]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2023.10.)

1) 구영산, “선거공보에 대한 고등학생 유권자의 흥미, 이해, 평가”, 청람어문교육(2022), p.104.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 반드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선거공보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점자용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²⁾ 표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그런데, 청각장애인의 경우 제1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⁴⁾로서 제1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장애인과는 달리 한글 이해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⁵⁾

2)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생김새는 다음과 같음.



3)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수어”란 손짓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보이는 언어이고, “한국수어”란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고유한 형식의 수어로서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문법 체계가 다른 별개의 언어임. 청각장애인에게 한국어는 외국어에 가까움.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2.2.), “수어와 다양한 문화의 포용, 2월 3일은 한국수어의 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488>)

5) 아시아타임즈(2022.5.30.), “선거 사각지대①] 유권자지만 소외받는 ‘청각장애인(농인)’”,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0530500151#_eniple#_mobwcvr

[시각·청각장애선거인에 대한 현행 선거공보 규정]

구분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장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
시각장애선거인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책자형 선거공보에 바코드 표시로 대체 가능)			재량사항
청각장애선거인	비장애인과 동일한 책자형 선거공보 제공			

이에 개정안은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어QR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제작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선거 및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선거 공보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2028년 5억 7,200만원, 2030년 45억 7,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1억 4,400만원(연평균 10억 2,900만원)이 소요됨.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2031	합계	연평균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 작성 (안 제65조제2항 등)	-	572	-	4,572	-	5,144	1.029

주: 1.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 작성(안 제65조제2항 등)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선거공보 내용을 수어통역사가 전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QR코드로 인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개정안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에 표시되는 수어QR코드는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바, “선거공보의 내용이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통하여 제공되는” 등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법문상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법률로서, 그 하위법령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형식으로 제정·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위임 사항의 규율 방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수어영상 QR코드 제작비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여부는 청각장애선거인과 비청각장애선거인 간 형평성 및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수어 QR코드’에 수어 영상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정비와 함께, 관련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